제 3 장. 등록금 책정 규정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등록금 책정 규정

[제정: 2013년 3월 1일]
[개정: 2015년 3월 1일]
[개정: 2016년 2월 1일]

제1조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1.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2. 제1항의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학생·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 심의위원 회를 설치·운영한다.
3.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및 학생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평균 가계소득, 등록금 의존율(학교 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등을 감안하여 당해 연도 적정 등록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4.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 이상 초과하지 않는다.
5. 제1항의 등록금의 징수,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재정적적 제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6. 수업료 및 입학금은 각급 학교 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2조 (등록금 결정요인)

등록금은 교무위원회의 등록금 결정의 안건에 대한 의결로서 결정한다.
<개정 2015.03.01.>

제3조 (과목별 수강료의 책정)

개별학습과목 수강생의 경우 수강료 책정 기준표에 따른 금액으로 정리한다.

[표 1] 개별학습과목 수강료 책정 기준표 (단위: 원)

분류	학습 구분	수강료 책정				비고
		수강료 (시간당)	3시수	4시수	5시수	
학점인정	전공	180,000	540,000	720,000	900,000	
	교양	120,000	360,000	480,000	600,000	
	일선	120,000	360,000	480,000	600,000	
전공심화	전일	120,000	360,000	480,000	600,000	

<개정 2015.03.01.>

제4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수강료 입력)
본교는 학습자 사전보고 하는 과정에서 각 수강료를 입력하여, 학습자가 교육비 등의 납입으로 인한 세액 공제 등의 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정: 2013년 3월 1일]
[개정: 2016년 2월 1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등록금 책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 한다.
1.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2. 그밖에 등록금의 합리적인 책정 등에 관한 주요사항
3. 교비회계의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는 교무부장과 교수 및 총무 담당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1. 학생대표 1명
 2-2. 관련분야 전문가 1명
3. 위원장은 교수회의를 통하여 임명하는 자로 한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팀장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서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02.01.>

제4조 (추천 및 위촉)
1. 학생을 대표 선발 공고를 통하여 심의를 거쳐 1명을 위촉한다.
2. 관련분야 전문가 교수회의를 통하여 위촉한다.

제5조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소집)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8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2. 의결사항이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결재권자는 이를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 (보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보고한다. 다만, 학교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심의 결과를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